

2023. 10. 1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2133-5360
---------	-----	-----------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2133-5374
---------	-----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센터장	정지연	2133-4897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7쪽

누리집	ecc.seoul.go.kr	
-----	-----------------	--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기 피해 급증.. 피해예방요령 알아두세요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신고 분석... '온라인 중개몰' 연계한 사기에 유의 당부
- 사기 사이트 피해 최근 '급증'... '유명 온라인몰 사칭' 피해만 올해 218건 달해
- 일방적 주문 취소한 뒤 추가할인 등 미끼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현금결제 유도
- 시 "사기 수법 고도화돼 유의 필요... 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 지속 논의·노력"

A씨는 지난 6월,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서 세탁기를 구매했다. 하지만 며칠 후 구매가 자동으로 취소되면서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유명 종합쇼핑몰 회원 가입 후 현금 결제하면 추가 할인해 준다'고 해 46만 8천 원을 입금했다. 이후 제품 입고가 지연된다는 핑계로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당장 제품을 보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버렸다.

- 서울시는 최근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과 연계하여 홈쇼핑 등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사이트에서 현금결제를 유도, 상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만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시는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8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국내 주요 4개 웹서버대여(호스팅) 업체 (가비아C&S · 아임웹 · NHN커머스 · 카페24) 간담회를 갖고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특정 단어가 포함된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차단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사기 사이트 · 패턴을 공유 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사기 사이트 피해 최근 ‘급증’... ‘유명 온라인몰 사칭 피해’만 올해 218건 달해>

- 시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사기 피해 사이트 수는 총 162개로, 전년보다 4배 증가했으며 지난 4년 (’19~’22년) 간 접수된 사기사이트 건수(총 78건)보다도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월~9월)
사기사이트 수	7개	12개	17개	42개	162개
피해건수	182건	101건	60건	226건	559건
피해금액	15,034천원	54,357천원	57,795천원	224,071천원	272,879천원
사이트 폐쇄 (호스팅사 협조)	7개	5개	14개	20개	66개

- 특히 사기 사이트 유형 중에서도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피해’가 218건(103개 사이트)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금액만 1억 4천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신고 접수된 사기 사이트는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전시 상품 할인판매 사이트 ▲일반 온라인몰을 가장한 사이트,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분 류	피해건수	피해금액	비 고
유명 온라인몰 사칭사이트	218건	139,500천원	오픈마켓 연계 소비자유인
전시상품 할인판매 사이트 (골프용품, 캠핑용품)	235건	70,219천원	
일반 온라인몰 (가전제품 및 IT 기기)	106건	63,160천원	
합 계	559건	272,879천원	

□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사기 판매자들은 주로 온라인 중개물(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한 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재고 부족을 이유로 취소 처리하고 미리 만들어 둔 사칭 사이트에서 재구매하도록 유도, 대금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시는 온라인 중개물(오픈마켓)에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될 때까지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탈취가 불가능하므로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허위 사이트’로 유인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관련 피해의 90% 이상이 비사업자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쉽게 입점할 수 있는 특정 온라인 중개물(오픈마켓)을 통해 발생했으며 감시가 느슨한 주말 사이 거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가전전문몰에서 최근엔 종합쇼핑몰까지 확산… 피해 예방요령 숙지 당부>

□ 서울시는 당초에는 유명 가전전문몰(피해건수 117건)에 한정해 사칭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유명 종합쇼핑몰(피해건수 101건)까지 확대, 가구·식품·골프용품 등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유명 온라인몰의 사업자 정보·이미지·로고 등을 그대로 도용하면서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알파벳 추가(예: 마지막 ‘s’ 추가) ▲특수문자 삽입(가운데 ‘-’ 삽입) 등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교묘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요령을 숙지해 둘 것을 당부했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 도메인(예시)	사칭 온라인 쇼핑몰 도메인(예시)
	
	

- 또한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 구매 건을 입점 판매자가 주문취소 후 품질·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별도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ecc.seoul.go.kr, ☎2133-4891~6)로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비자들이 유명 온라인몰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며 “오픈마켓 판매자 본인인증 강화, 주말·공휴일 등 비정상 거래취소 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업계와 지속 논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해 예방요령 및 사례

□ 소비자 행동 요령

- 20만원 이상의 상품은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 사기 사이트는 계좌이체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0만원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시 문제가 발생해도 할부항변권(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 구매 전 사기사이트 정보 확인하기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사기사이트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정보공개에서 조회된 통신판매업자와 사이트 정보를 비교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www.police.go.kr), 더치트(thecheat.co.kr)에서 판매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최근 사기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기의심 판매자가 알려주는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구매) 금지
 - 사기 피해는 온라인 중개물(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주문취소 후 별도로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대부분 발생
 - 온라인 중개물(오픈마켓)의 구매 건을 판매자가 취소 후 재고나 추가할인 등을 이유로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구매하지 마세요.
(카드결제 아이콘 클릭 시 카드 결제 재고 모두 소진 알림이 떠도 구매 금지)
-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의심 되면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 신청(ecc.seoul.go.kr, ☎ 2133-4891~6)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ecrm.police.go.kr)

□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해사례

- **【사례1】** 소비자 A는 6월 포털사이트에서 가격검색 후 최저가로 판매하는 오픈마켓에서 세탁기를 구매했다. 하지만 구매가 취소처리되며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유명 종합쇼핑몰의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면서 회원 가입 후 현금 결제 시 추가할인이 가능하다고 해 6.13.(화) 46만 8천 원을 입금했다. 이후 판매자가 상품 배송이 지연된다고 알려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상품이 바로 배송되지 않을 경우 신고할 것을 알렸다. 현재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 이 차단된 상태로 판매자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 **【사례2】** 소비자 B는 LED TV를 구매하기 위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링크된 오픈마켓에 접속했다. 상품 페이지에 재고 문의 후 구매하라는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현재 해당 오픈마켓에는 재고가 없다며 다른 오픈마켓 상품 페이지 링크를 보내주어 6.17.(토) 5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확인차 하단의 하단에 기업소개 메뉴를 클릭하니 다른 업체의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그 사이 판매자 카카오톡은 비활성화된 상태였다. 지금까지 상품은 배송되지 않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례3】** 소비자 C는 오픈마켓에서 자신이 구매하려는 전기자전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를 문의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다른 유명 오픈마켓 링크를 보내주며 구매하라고 안내했다. 요즘에는 판매자들이 복수의 오픈마켓에 입점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판매자가 알려준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4.2.(일) 123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에 상품배송 또는 환불에 대해 아무런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붙임2〉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피해현황

□ 사칭 유형별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

(기간: 2023.01.01.~09.30.)

사칭 유형	사칭 대상		피해건수	피해금액
종합온라인몰	롯데	롯데관계사	19건	27,947천원
		롯데ON	19건	14,746천원
		롯데홈쇼핑	1건	567천원
	11번가		15건	12,937천원
	옥션		5건	7,130천원
	신세계	신세계몰	15건	4,204천원
		신세계관계사	5건	2,795천원
		이마트몰	2건	1,910천원
	CJ	CJ 관계사	1건	1,260천원
		CJ ONSTYLE	1건	468천원
	인터파크		6건	1,669천원
	GS SHOP		5건	1,305천원
	AK MALL		3건	950천원
	홈앤쇼핑		2건	566천원
	현대홈쇼핑		2건	116천원
가전전문몰	롯데하이마트		77건	36,041천원
	전자랜드		14건	10,676천원
	LG전자 인증판매점		13건	10,464천원
	컴퓨존		8건	2,150천원
	일렉트로마트		5건	1,599천원
합 계			218건	139,500천원